

회계업무흐름과 발생주의 · 복식부기 결산의 연계



제 1 장

**업무처리과정과
복식부기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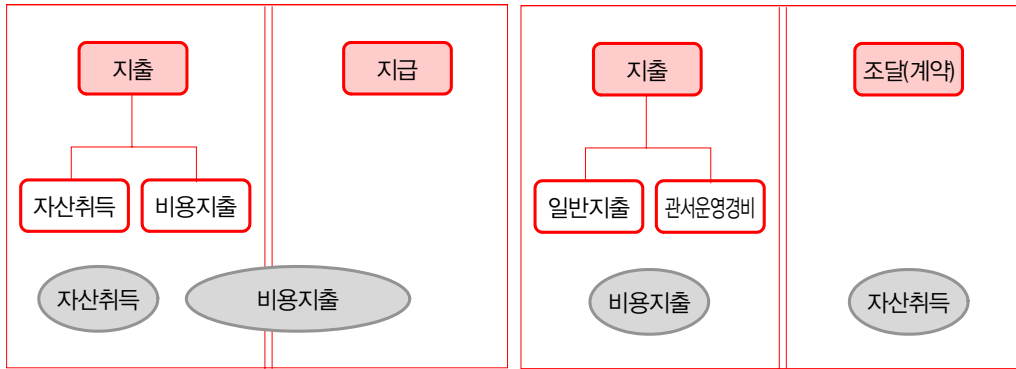
01 절 | 업무처리과정과 복식부기의 연계

1. dBrain 업무처리와 복식부기의 관계

- dBrain시스템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물품 등 기존의 예산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동 업무의 효과가 재무계정과목으로 자동분개 되도록 함으로써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결산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임.
- 이는 마치 먹지 위에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음. 예산업무의 결과가 그대로 재무결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업무를 처리할 때 올바른 절차를 거친다면 재무결산 역시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고, 예산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잘못된 재무결산에 이르게 되기 때문임.
- 예산업무를 통한 재무결산업무의 자동적인 진행은 결산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재무결산업무 과정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어렵고 나아가 각 절차의 올바른 이행을 검증하기 어려운 면도 있기에 결산담당자의 재무결산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 교재를 준비하였음.

2. 세출

- 세출은 개념적으로 크게 국고금을 사용하는 일반지출과 국고예금을 사용하는 지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지출은 다시 그 지출 목적에 따라 비용지출과 자산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반면, dBrain시스템은 업무흐름의 유형에 따라 세출을 지출과 조달(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비용의 지출은 일반지출과 관서운영경비지급 형태로 지출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자산의 취득은 조달(계약)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 것임.

(1)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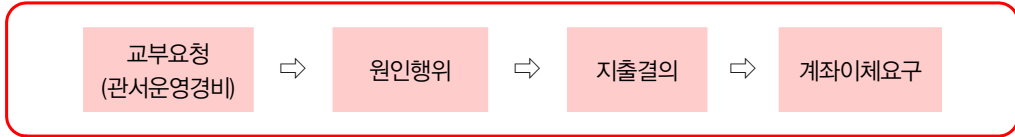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출은 지출 건마다 원인행위를 거침으로써 국고금을 사용하는 <일반지출>과 최초 교부 시에만 원인행위를 거치고 국고예금을 사용하는 <관서운영경비지급>으로 구분됨.

①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관서운영경비는 사전에 교부받은 일정금액 안에서 지출 건마다 원인행위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절차를 간소화시킨 제도로서 일종의 소액현금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간소화된 절차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관서운영경비는 그 용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40) 등에 소요되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일정한 경비의 지출에 한정하고 있음. 관서운영경비는 자산취득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복식부기 관점에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은 비용이 계상되는 회계처리로만 나타나게 됨.
- 다음은 사전에 5백만원의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는 과정과 그 중에서 인쇄비 2백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업무흐름도와, 각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분개 결과를 보여주는 표임.

그림 1 | 관서운영경비의 업무흐름도

[교부 시]



[지급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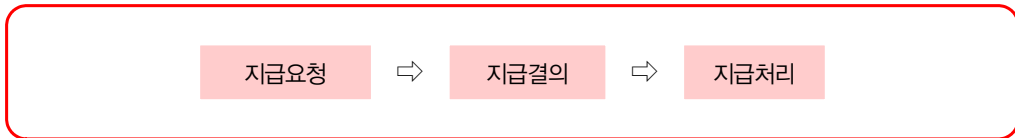


표 1 | 관서운영경비 지급 시 자동분개 처리결과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교부 시	국고예금	5,000,000	국고수입	5,000,000
지급 시	인쇄비	2,000,000	국고예금	2,000,000

- 집행단위 담당자로부터 관서운영경비 교부요청을 받으면 재무관은 원인행위를 수행함. 지출관은 이 원인행위를 근거로 지출결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출납 공무원이 자금을 수령하게 됨. 이와 같은 예산업무 처리 중에서 회계처리가 발생하는 곳은 출납공무원이 자금을 수령하게 되는 [계좌이체] 과정뿐임.
- 교부요청부터 지출결의까지의 과정은 복식부기 관점에서 자산·부채의 발생이나 교환이 일어나는 의미 있는 경제적 사건이 아니므로 회계처리가 일어나지 않음. 즉, 교부요청이나 지출결의 과정은 단순히 해당 부처의 내부적인 업무절차로 한국은행 등 타 회계나 기금과의 거래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회계처리 대상이 되는 경제적 거래가 되지 않는 것임.
- 위 사례에서는 타 정부기관인 한국은행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 5백만원을 수령하는 단계인 [계좌이체] 시점에 이르러서야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됨. 표에 나타난 교부 시 회계처리는 수령한 관서운영경비 금액 5백만원을 차변에 국고예금으로 계상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예금을 받아왔다는 표시로 국고수입 과목으로 하여 대변에 동일한 금액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임.

- 관서운영경비 지급 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급요청과 지급결의 과정은 경제적 실질이 없는 내부절차이므로 출납공무원의 지급처리가 이루어지는 계좌이체 시점에서만 회계처리가 발생함. 인쇄비로 지급처리 된 2백만원의 금액만큼 관련 비용계정과목인 인쇄비로 계상하고 동액을 국고예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가 바로 <표 1> 두 번째 줄의 회계처리임.

② 일반지출

- 일반지출은 관서운영경비와 달리 금액의 제한이 없는 대신 지출 건마다 원인행위를 거침으로써 곧바로 국고금으로 지급되는 지출임. 일반지출의 업무처리 흐름과 관련된 자동분개 처리결과는 아래 <그림 2> 및 <표 2> 와 같이 나타남.

그림 2 | 일반지출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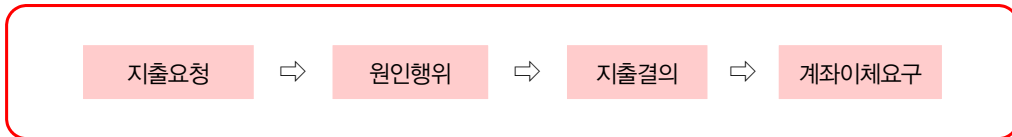


표 2 | 일반지출 시 자동분개 처리결과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일반지출	보관비	8,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8,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8,000,000	국고수입	8,000,000

- 일반지출은 물품보관료 8백만원을 지출하는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함. 집행단위 담당자로부터 보관료 지출을 위한 지출요청을 받으면 재무관은 원인행위를 수행함. 지출관은 이 원인행위를 근거로 지출결의와 함께 수령인에게 계좌이체를 하게 됨. 앞에서 언급한 관서운영경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출결의 과정까지는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계좌이체요구에 따라 계좌이체가 일어날 때 물품보관료 8백만원 및 동액의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각각 차변과 대변에 계상하게 됨. 이후 국고금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국가예금을 차변에, 국고수입을 대변에 계상하는 분개가 다시 한 번 발생하며, 이는 모든 지출에 공통된 분개임.
- 사례 및 회계처리에서 보듯이 일반지출은 금액제한이 없고, 국고금을 사용하므로 대변에 국고수입 계정이 나타난다는 점 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관서운영경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2) 조달(계약)

- 국유재산 또는 물품으로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1년 이상 사용할 유·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해서는 G2B시스템인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하게 됨. 조달(계약)을 통한 자산의 취득업무 흐름과 이와 관련된 자동분개 처리결과는 일반적인 경우와 선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함.

① 일반적인 경우

- 대금지급이 여러 번에 걸쳐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조달(계약)을 통한 자산취득 업무흐름과 자동분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그림 3 | 조달(계약) 업무 흐름 1

[일반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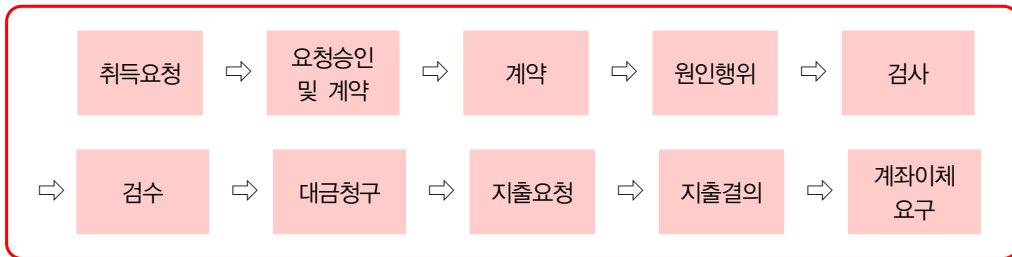


표 3 | 일반적인 자산취득 시 자동분개 처리결과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검수	사무용기기	20,000,000	기타미지급금	20,000,000
대금지급	기타미지급금	2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20,00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20,000,000	국고수입	20,000,000

- 조달(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자산취득은 업무용 프린터를 2천만원에 취득하는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함. 사업담당자의 업무용 프린터 취득(구매)요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계약요청서를 작성한 뒤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계약담당자가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확인한 뒤 재무관은 원인행위를 수행함. 이후 조달업체의 검수요청에 따라 검사와 검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과하면

나라장터의 대금청구와 계약담당자의 지출요청에 따라 지출관의 대금지급 즉, 계좌이체가 이루어짐.

- 위에서 나열된 자산취득의 업무과정 중 자동분개가 이루어지는 곳은 [검수], [계좌이체] 단계임. 취득요청에서 원인행위, 검사에 이르는 업무과정은 국가 입장에서 해당 자산을 법적으로 인수하기 이전의 과정이므로 복식부기 관점에서 단순히 계약만 이루어졌을 뿐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음. 이를 쉽게 설명하면 검수 이전까지의 과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 검수 단계에서야 비로소 국가의 업무용 프린터에 대한 구매확정이 이루어진 것이며, 때문에 물품가액 2천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기타의미지급금의 과목으로 대변에 계상되고 동시에 사무용기기의 자산 계상 및 물품대장상의 등재가 이루어짐.

② 선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자산 인수 이전에 선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달(계약)을 통한 자산취득 업무흐름과 자동분개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4 | 조달(계약) 업무 흐름 II

[선금이 지급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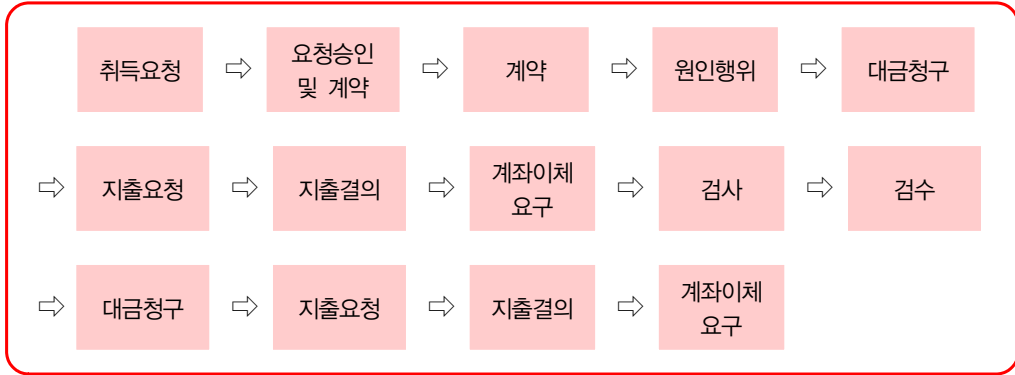


표 4 | 선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취득 시 자동분개 처리결과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선금지급	선금금(건중자산)	1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국고수입	10,000,000
검 수	내부개발소프트웨어	40,000,000	선금금(건중자산)	10,000,000
			기타미지급금	30,000,000
잔금지급	기타미지급금	3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	국고수입	30,000,000

- 선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예산업무 흐름상 위에서 살펴 본 일반적인 자산취득과 큰 차이가 없음. 단지, 자산 검수 이전에 대금지급이 발생한다는 점뿐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취득요청, 원인행위, 지출결의 등의 내부절차는 경제적 자원의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못하므로 선금 및 잔금이 [계좌이체]되는 단계와 [검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만 회계처리가 발생함.
- 선금 1천만원을 포함한 총 가액 4천만원의 내부개발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선금 1천만원이 계좌이체요구에 따라 지급되면 동 금액을 선금금 또는 건설중인자산 과목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함. 이렇게 지급된 선금금 1천만원은 향후 검수가 이루어질 때 본자산인 내부개발소프트웨어로의 대체를 통해 본자산가액에 포함되게 됨. 즉, 이전에 계상한 선금금은 인수 이전에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가계정이므로 잔금 3천만원과 함께 본자산으로 대

체될 때까지만 사용되는 계정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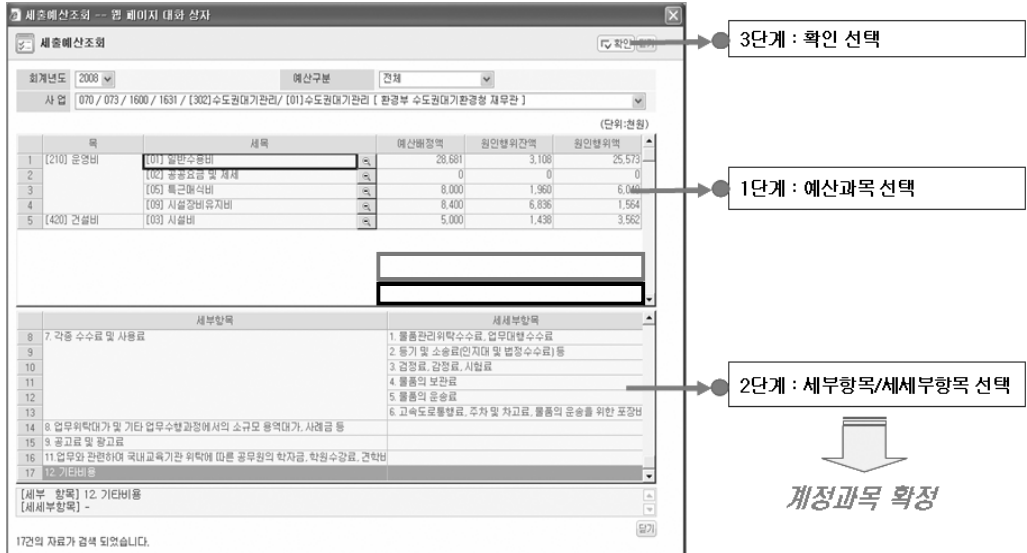
- 위 회계처리를 보면 검수 시점에서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인수가액 4천만원 중 3천만원에 대해 아직 지급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기타미지급금의 과목으로 대변에 계상된 것을 알 수 있음. 이렇게 계상된 기타의미지급금은 세 번째 회계처리와 같이 이후 잔금 청산이 이루어질 때 상계되게 됨.

3.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타나는 잘못된 회계처리

(1) 비용지출 시

- 관서운영경비 및 일반지출의 경우 무엇보다 절차상 올바른 세부 및 세세부항목의 선택이 중요함. 세세부항목의 선택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비용 계정 과목이 달라지게 되므로 잘못된 세세부항목을 선택하면 재정운영표 및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잘못된 수치가 기입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임.
- 아래의 <그림 5>는 세부 및 세세부항목의 선택을 통해 재무계정과목을 확정짓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예를 들어,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운송비 6백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세세부항목 중에서 지출된 운송비와 관련있는 [5.물품의 운송료]가 아닌 [4.물품의 보관료]를 선택하게 되면 재정운영표에 운송비 6백만원이 과소계상 되는 동시에 보관비가 동액만큼 과대계상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임.
- 이러한 비용 지출의 경우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국유재산·물품처럼 대장등재를 통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처리결과를 되돌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재정운영표에 잘못된 수치가 기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부 및 세세부항목 선택과정에서의 업무담당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 간 연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그림 5 | 세부 및 세세부항목 선택 과정



(2) 자산취득 시

- 앞에서 보았던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취득 사례에서 검수 이전에 지출한 선급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을 본자산으로 대체하고 검수 이후에 미지급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계약번호와 자산(대장)번호임. 검수 이전 시점에서는 동 거래의 계약번호로써 이미 지출된 선급금 가액을 본자산 가액에 대체시키고, 검수 이후 시점에서는 새롭게 부여받은 자산(대장)번호를 통해 검수 후 지출되는 금액을 기존에 남아있던 미지급금의 정산과 연결시키는 것임.
- 이러한 연결 과정은 dBrain 시스템 내 [나의할일] 메뉴에서의 알림를 통해 대부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 부대비배부 등 일부 과정의 경우 국유재산 또는 물품 담당자의 별도 처리가 필요하므로 업무진행 시 주의를 요함.
- 각 담당자가 dBrain 상에서 취득요청에서 계좌이체요구에 이르는 예산업무의 각 과정을 올바르게 이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이 잘못 계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 이러한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급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의 본자산으로의 미대체, 부대비 미배부 사례임.

① 선금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이 본자산으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 다음 표는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취득과정에서 선금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을 본자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분개 결과임.

표 5 | 선금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의 본자산 미대체 시 나타나는 자동분개 처리결과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선금지급	선금금(건중자산)	1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국고수입	10,000,000
검수	내부개발소프트웨어	30,000,000	기타미지급금	30,000,000
잔금지급	기타미지급금	3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	국고수입	30,000,000
대장 마감시	내부개발소프트웨어	10,000,000	기타의순자산증가	10,000,000

- 검수 시점에서 선금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을 선금 지급시점에서 본자산 대체 과정을 통해 내부개발소프트웨어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잔금 지급액인 3천만원만 계상하게 되므로 내부개발소프트웨어는 선금 지급금액 1천만원 만큼 과소계상 됨.
- 이후 국유재산담당자는 국유재산대장 마감 시 대장에 내부개발소프트웨어가 1천만원 만큼 과소계상 되어 있으므로 기타증감 처리를 통해 자산 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게 됨. 즉, 부족한 1천만원 만큼 내부개발소프트웨어를 증가시키고 순자산 계정인 기타의기타순자산증가를 동액만큼 계상하게 되는 것임. 이러한 처리는 재무상태표에 선금금 또는 건설중인자산 1천만원과 기타의순자산증가 1천만원이 남아있게 하여 재무상태표 상 자산과 순자산을 과다하게 표시하는 왜곡을 낳게 됨.

② 부대비가 본자산 가액에 배부되지 않은 경우

표 6 | 부대비 미배부 시 나타나는 자동분개 처리결과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부대비 지출	건설중인자산	5,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000	국고수입	5,000,000
검수	내부개발소프트웨어	30,000,000	기타미지급금	30,000,000
잔금지급	기타미지급금	3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30,000,000	국고수입	30,000,000
대장 마감시	내부개발소프트웨어	5,000,000	기타의순자산증가	5,000,000

- 부대비를 올바르게 배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보았던 선급금 미대체 경우와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됨. 내부개발소프트웨어에 대해 검수 시점 이전에 부대비비용 5백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봄.
- 첫 번째 회계처리는 부대비비용 5백만원의 계좌이체에 따라 차변에 건설중인자산 5백만원이 계상되는 것을 보여줌. 두 번째 회계처리는 검수를 통해 내부개발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지출된 부대비비용을 본자산에 배부시키는 부대비 배부과정을 지키지 않아 건설중인자산 5백만원 만크이 내부개발소프트웨어로 대체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위의 선급금 미대체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담당지는 이후 대장 마감 시 과소계상되어 있는 부대비비용 5백만원 만크을 기타증감처리를 통해 증액시키게 되고 이는 재정상태표의 왜곡표시를 불러오게 됨.

③ 선급금(건중자산) 또는 부대비 대체의 중요성

- 위 사례에서처럼 취득 이전에 지출된 선급금이나 취득 부대비비용을 정상적인 대체 과정이 아닌 기타증감처리를 거쳐 본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의 차변에는 선급금 또는 건설중인자산이, 대변에는 기타의순자산의증가 계정이 과대계상 되어 나타나게 됨.
- 이렇게 기타증감처리를 통해 과대계상된 선급금 및 건설중인자산 가액은 더 이상 본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재정상태표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됨. 더군다나 향후 자산 취득거래가 계속될수록 재정상태표 상

왜곡금액이 점차 누적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됨.

- 따라서 자산취득의 경우 선금 및 부대비의 대체과정을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기타증감처리를 통한 자산가액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4. 수입

일선관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수입 유형은 크게 세외수입과 자산의 매각을 들 수 있음.

(1) 세외수입

그림 6 | 징수 예산업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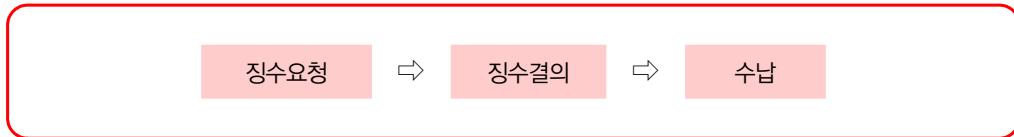


표 7 | 세외수입업무의 자동분개 처리결과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징수결의	미수금	10,000,000	수익	10,000,000
수납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미수금	10,000,000
국고금회계	국고이전지출	1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수수료수익 1천만원을 징수하는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함. 사업담당자가 수입 징수고지 요청을 수행하면, 수입징수관은 징수고지를 통해 징수결의 절차를 수행함.
- 징수결의 시점에 차변에 미수금으로 징수대상에 대한 국가의 채권이 인식되고, 수익의 가득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대변에 수익이 인식됨. 동 채권은 징수관이 해당 미수금을 징수하였을 때 수납정산 처리됨. 이때 징수결의 시 분개되었던 미수금이 제거되면서 한국은행국가예금으로 처리되는 자동분개가 형성됨.
- 이후 국고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수령한 한국은행국가예금을 국고에 넣고, 국

고이전지출로 기록하는 국고금 회계처리가 뒤따름. 이는 모든 수입에 공통된 분개임.

(2) 자산의 매각

그림 7 | 자산 매각 시 업무 흐름



표 8 | 자산 매각 시 나타나는 자동분개 처리결과

구분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징수결의	기타의미수금	10,000,000	선수금	10,000,000
수납정산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기타의미수금	10,000,000
인 계	선수금	10,000,000	자산	10,000,000
국고금회계	국고이전지출	10,000,000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000

- 일반적인 자산매각은 업무용 프린터를 1천만원에 매각하는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함. 사업담당자의 업무용 프린터 매각요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계약요청서를 작성한 뒤 온비드(OnBid)에 입력함. 사업담당자가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확인한 뒤 매각 계약정보에 의한 징수요청을 수행하면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의를 수행함. 이후 징수관이 매각대금의 입금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인계를 통한 자산 소멸 절차를 수행함.
- 위에서 나열된 자산매각의 업무과정 중 자동분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징수결의], [수납정산], [인계] 단계임. 매각요청에서 징수요청에 이르는 업무과정은 해당 자산을 법적으로 처분하기 이전의 매각계약 체결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복식부기 관점에서는 이에 대해 단순히 계약만 이루어졌을 뿐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발생하지 않음.
- 수입징수관의 [징수결의]에 따라 자산 매각대금에 대한 국가의 법적 권리가 창출 되었으므로 차변에 기타의미수금이 계상되지만, 수납정산 및 인계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대변에 자산이 아닌 선수금을 계상하는 독특한 회계처리가 발생함. 동액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계상되어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준다는 의미를 가짐.

- [수납정선과 [인계를 쉽게 표현하면 약속한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자산 매각대금의 [수납정선이 이루어지면 수납된 한국은행국가예금 1천만원을 차변에 계상하고, 대변에는 기타의미수금의 감소를 기록함.
- [인계가 이루어지면 매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용기기의 가액만큼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기록하고, [징수결의] 과정에서 발생된 선수금의 감소를 차변에 기록함으로써 자산처분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됨.

서두에서 강조하였듯이 dBrain시스템은 각각의 담당자가 예산업무의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재무결산에 대한 큰 부담없이 올바른 재무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특히,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세부 및 세세부항목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선금 및 부대비용의 본자산으로의 대체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제2장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01 절 | 성격 및 체계

1.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성격

(1) 예산과목의 성격

① 예산의 정의

- 예산은 특정기간의 돈에 관한 운영계획으로 계획, 통제 및 평가를 위한 것이나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문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예산은 통제, 관리, 계획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시장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의 결정은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은 주로 정치적, 행정적 목적에 의해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 기능, 활동의 기술 및 목표, 제공된 편익과 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② 예산과정의 기능

-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지출에 대한 통제기능** : 예산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는가를 통제
 - **관리기능** : 동일한 업무를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하였는가, 정부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파악 가능하도록 함.
 - **정부목표달성 및 운영성과 평가기능** : 정부가 설정한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운영 및 성과평가의 기능을 함.

③ 예산과목의 성격

- 정부는 예산과정의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인 지출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인 목과 세목별로 정부의 지출내역을 정함.

-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예산과목을 통해서 편성하고, 이를 수행한 후에는 예산결산을 통해서 정부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정부가 설정한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운영 및 성과평가의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예산과목은 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성과평가 활동을 표현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음.

(2) 재무계정과목의 성격

① 재무회계의 정의

-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루어지는 계획이고, 회계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록임. 회계는 인식기준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구분되는데,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해 수립된 예산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체계를 예산회계,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라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의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재무회계라고 함.

② 재무계정과목의 성격

-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라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의 입체적인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재무회계의 특성 상 재무계정과목은 예산과목처럼 현금주의에 입각한 계정과목은 물론, 발생주의계정과목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재무계정과목이 예산과목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2.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체계

(1) 예산과목의 체계

- 예산과목은 목과 세목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목은 인건비(100), 물건비(200), 이전지출(300), 자산취득(400), 상환지출(500), 전출금등(600), 예비비및기타(700)로 구성되어 있음.

- 세목은 일반수용비(210-0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등 각각의 목의 하위 개념으로, 포괄적인 개념인 목을 상세히 구분하여 세부적인 내역으로 표현하고 있음.

(2) 재무계정과목의 체계

- 대분류(Level I)는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기본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의 구분을 말하며, 이는 다시 일정기준에 따라 중분류 항목으로 나뉘어짐.
- 중분류(Level II)는 대분류를 국가회계기준(유동성 기준)에 따라 구분함.(ex.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등)
- 회계과목(Level III)은 예산과목에 대응되는 재무결산 보고의 기본단위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공시과목임.(ex.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등)
- 관리과목(Level IV) 및 세부관리과목(Level V)은 회계과목의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회계처리 시 사용되는 기표과목이며, 관리과목 및 세부관리과목은 향후 필요시 추가로 설정 가능함.

02절 | 연계의 의의 및 필요성

1. 연계의 의의

(1) 예산과 회계의 연계의 개념

- 예산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회계가 밀접히 연계되어야 하며, ‘예산과 회계의 연계’란 예산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는 집행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예산과 회계 양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인식상의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정보의 추출을 확보하려는 의도
 - 현금주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예산과 발생주의 적용을 받는 재무회계간의 연계를 통해 예산과정의 합리적 통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의 확보 등 정부 운영을 위한 보다 신뢰성 있고 올바른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것
 -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회계가 기여하는 것

(2) 예산과 회계의 연계의 유형

- 예산과 회계의 연계는 연계의 과정(직접·간접) 및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하며, 현재 중앙정부는 예산거래의 정보를 회계정보로 전환하여 연계하는 관리과목 연계유형을 채택하고 있음.

연계유형별		의 미	특 징
완전연계		예산회계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이 회계연도 개시전부터 결산시까지 동일한 체제 내에서 운영	예산의 전체과정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함. 회계연도 어느 시점에서든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통합정보를 제공 가능함
불완전연계	관리과목연계(現)	예산회계항목과 재무회계항목을 연계하는 중간항목을 통한 연계	예산회계 시스템의 정보를 관리항목으로 연결하여 재무회계 시스템의 정보로 전환하여 연계하며 회계기간 시작부터 연계가 가능함
	결산연계	예산회계 시스템과 재무회계 시스템이 별개로 운영되며 결산시점에서 통합	예산회계 시스템과 재무회계 시스템상 처리가 거래별로 별도로 이루어지며, 결산조정을 통하여 연계하는 형태임
	기록연계	예산회계 시스템과 재무회계 시스템이 별개로 운영	재무회계 시스템은 단지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의 기록으로서 가능하며, 예산집행의 합법성 여부를 기록하는데 초점을 맞춤

2. 연계의 필요성

(1) 예산 기능의 효과적 수행

-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산과정은 지출에 대한 통제기능, 관리기능, 정부목표달성 및 운영성과 평가기능을 수행함.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과 실적을 대비하는 것을 넘어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연계시켜 정부운영의 결과와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2) 정부성과의 올바른 파악

- 재무회계가 예산회계와 연계되지 않고 기록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할 경우, 재무회계는 장부정리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여, 정부성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
- 그러나 현행 예산결산에서 예산과 이를 집행한 지출 실적을 대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의 지출의 정당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여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함.
-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그 결산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가를 판단하고, 정부활동의 성과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정보가 정부 예산자료와 연계성을 지녀야 함.

(3) Feedback 기능의 강화

- 일반적 예산회계에서는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현행 예산결산에서의 단순한 실적만 대비 시 적절한 자본수지(순자산)에 대한 계획이 어려워 예산수립에 합리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발생주의 회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자본(순자산)수지를 고려한 예산수립의 Feedback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03 절 |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방안 및 유의사항

1.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방안

- 현재 중앙정부는 예산회계에 익숙한 공무원의 현실을 감안하여 업무의 진행은 예산회계에 근간하여 수행하되, 발생하는 예산 거래유형에 따라 예산회계 정보가 재무회계 정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산의 집행 시 예산과목이 재무회계계정과목으로 연계되도록 함.
- 현재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을 연계하여 거래처리의 효율성 및 실적정보의 예산 환류 기능을 제고함.
 - 예산과목은 단순한 예산의 기록 측면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처의 예산 소요 단위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업의 업무를 반영
 - 예산과목의 최하위 과목(세목의 세부항목)이 재무계정과목의 최하위 단위와 대응
 - 수익·비용에 해당하는 예산과목의 경우 예산과목과 계정과목이 1:1 또는 1:n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계정과목을 세분화
 - 하나의 재무계정과목이 둘 이상의 예산과목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산과목의 구성항목의 일부를 정비
 - 자산·부채 변동에 해당하는 예산의 경우 예산계정과목과 회계계정과목이 1:1, 1:n 뿐만 아니라 n:1 방식으로도 대응
 - 현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반영된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는 ‘계정과목 매핑(Mapping)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최하위 단위인 세목 내 세부항목별로 재무계정과목을 연결시킨 표를 의미함.

표 1 | 계정과목 매핑표 예시

예산과목 구분		MAPPING구분	재무 계정과목	레벨별 계정과목				
목(I)	세목(II)	세부항목	CODE	1	2	3	4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구입비	51040100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51050000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인쇄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3.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51040200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소모품비	홍보물품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4. 소모성물품 구입비	51040300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소모품비	소모성물품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4. 소모성물품 구입비	51040500	비용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소모품비	의료용품비

- 중앙정부는 이러한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결과를 업무의 유형별로 시스템에 반영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앙정부 공무원은 업무 수행 시 별도의 계정과목 선택 없이 자동으로 분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다만, 예산과목은 현금주의 기준에 의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입세출 예산과 연계되지 않는 발생주의 재무계정과목(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은 별도로 분개하여 반영하여야 함.

2. 연계 시 유의사항

- 예산과목을 재무계정과목으로 연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자동 분개가 이루어짐. 하지만 예산과 회계의 연계가 완전연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회계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이 회계연도 개시전부터 결산시까지 동일한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님.
- 현재 자동 분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예산회계 시스템의 정보를 관리항목으로 연결하여 재무회계 시스템의 정보로 전환하여 연계한다는 뜻임. 따라서 예산회계 시스템과 재무회계 시스템 간의 연결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사용되는 것이 예산목, 세목의 재무계정과목으로의 연계임.

그림 1 | 세출예산 조회 화면

The screenshot shows a software interface for budget inquiry. At the top, there are fields for '회계년도' (Fiscal Year) set to 2008, '예산구분' (Budget Category) set to '전체' (All), and '사업' (Project) with a list of codes. Below this is a table with columns: '과목' (Item), '세목' (Sub-item), '예산배정액' (Budget Allocation), '원인행위금액' (Cause of Action Amount), and '합인행위액' (Total Cause of Action Amount). The table lists items like '운경비' (Operating Expenses) and '견습비' (Apprentice Fees). Below the table is another section for '세부항목' (Sub-item) and '세세부항목' (Detail Sub-item) with a list of 17 items. At the bottom right, there is a '계정과목 확정' (Confirm Account Item) button. Three callout boxes are present: '3단계 : 확인 선택' (3rd Step: Confirm Selection) pointing to the '확인' button, '1단계 : 예산과목 선택' (1st Step: Budget Item Selection) pointing to the '예산과목' column, and '2단계 : 세부항목/세세부항목 선택' (2nd Step: Sub-item/Detail Sub-item Selection) pointing to the '세부항목/세세부항목' column.

- 이를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일선관서에서 거래를 입력할 때 다양한 정보를 요구함.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210-01)을 집행할 때 2단계의 과정을 요함.
- 1단계는 예산과목의 선택임. 이는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목과 예산세목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현재 예산배정액과 원인행위잔액, 원인행위액 등의 정보가 표시 됨. 이 단계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과목을 선택하면 2단계 세부항목/세세부항목 선택 단계로 진행됨.
- 2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각목명세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세부항목/세세부항목에 대한 선택이 요구됨. 이는 예산편성 시 고려된 세부항목/세세부항목에 따라 연계될 재무계정과목을 확정짓는 단계임. 이를 통해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 간의 연계가 실현됨.
- 이 단계에서 일선관서 실무자의 주의가 필요함.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빈번히 일어나는 일반지출의 경우 세부항목/세세부항목 선택 시에 적절하지 못한 선택을 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가 1:1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n일 경우에 특히 주의를 요함.

그림 2 | 세세부항목 선택 시 분개처리

The screenshot shows a software interface for budget management. At the top, there are fields for '회계년도' (Fiscal Year: 2008), '예산구분' (Budget Category), and '단체' (Agency). Below this is a table with columns: '목' (Item), '세목' (Sub-item), '예산액' (Budget Amount), '원안행위금액' (Original Action Amount), and '원안행위액' (Original Action Amount). The table lists items like '보관비' (Storage Fee) and '국고수입' (National Revenue). A callout box labeled '3단계 : 확인 선택' points to a '확인' (Confirm) button. Another callout '1단계 : 예산과목 선택' points to the '목' column. A third callout '2단계 : 세부항목/세세부항목 선택' points to a dropdown menu showing sub-items like '1.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and '4. 물품의 보관료'. A large arrow labeled '계정과목 확정' points downwards from the sub-item selection area.

- ① 보관비 100 / 국고수입 100
- ② 업무대행수수료 100 / 국고수입 100

-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수용비(210-01)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일반수용비라는 예산과목은 14개 이상의 재무계정과목으로 연계될 수 있음. 예산과목 예산세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14개의 재무계정과목으로 구분하려면 세부항목/세세부항목이 필요함. 세부항목/세세부항목은 기본적으로 각목명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므로 일선관서 실무자는 이를 숙지하여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 과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적절하지 못한 세부항목/세세부항목을 선택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이를 검증하는 방법이 없으며, 다음 단계 업무의 진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간과하기 쉬움.
- 예를 들어 물품의 보관료를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림 2>에서 세세부항목의 '4. 물품의 보관료'를 선택하여야 함. 이때 ①번 분개가 생성되어 올바른 처리가 됨.
- 하지만 만일 세세부항목의 '1.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를 선택한다면 ②번 분개가 생성되어 적절치 못한 비용 계정과목이 생성됨.
- <별첨 1>은 가장 많은 재무계정과목과 연계되는 예산과목인 일반수용비(210-01)

및 일부 예산목/예산세목에 대한 연계 참고 자료임. 각 지출의 예시를 통해서 일선관서 실무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추가적으로 재무계정과목에 대한 설명도 <별첨 2>로 첨부하였음.

<별첨 1> 일반수용비 재무계정과목 연계 예시

<별첨 2> 재무계정과목 해설

별첨 1 일반수용비 재무계정과목 연계 예시

지출종류	세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문구류, 프린터토너, 천공기 천공드릴교체 등	210-01	1. 사무용품 구입비 * 계정과목 : 사무용품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명함인쇄, 회의 자료집 제작, 연하장 인쇄, 법령집 인쇄 등	210-01	2. 인쇄비 및 유인비 * 계정과목 : 인쇄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현수막, 기념패, 명패, 상장 제작 등	210-01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계정과목 : 홍보물품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관련제작비,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청소물품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행정봉투구매 등	210-01	4. 소모성물품 구입비 * 계정과목 : 소모성물품비	1. 소모성물품비(물품관리법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구급약 구매 등	210-01	4. 소모성물품 구입비 * 계정과목 : 의료용품비	2. 의료용품비
신문구독료 등 구입비성격(인쇄비와 다름),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 등 간행물 구입비 등	210-01	5. 간행물 및 도서용품비 * 계정과목 : 간행물비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프린터수리비 등	210-01	6. 비품수선비 * 계정과목 : 기타일반유형 자산수선유지비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소송비용, 등기수수료 등	210-01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계정과목 : 등기료법정 수수료	2.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등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비, 하이패스 충전, T머니카드 충전,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210-01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계정과목 : 상하차비	6.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철도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공공요금에 포함)
참석수당, 안건검토비, 회의수당, 위원수당, 통역사례비 지급, 민간전문가 사례비, 법무사 수입료 등	210-01	8.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계정과목 : 기타용역비	변호료, 수입료, 자문료, 상금, 국가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 각종위원회 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사례비, 안건검토비
전화, 인터넷, TV, 우편 사용료 등	210-01	12. 기타 공공요금 * 계정과목 :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등 기타공공요금
	210-02	1. 공공요금 * 계정과목 : 공공요금	1.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 화물 운송요금

지출종류	세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자동차세, 소방안전협회비, 각종 협회비, 방화 관리자 회비 등	210-02	2. 제세 * 계정과목 : 제세	1.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관세 등)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화재보험, 차량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재해보험료 등	210-02	2. 제세 * 계정과목 : 지급보험료	5.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업무용 차량 임차료 등	210-07	3. 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계정과목 : 기타자산임차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및 ASP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포함
관용차량 정비, 세차 등	210-10	2. 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 계정과목 : 기타일반유형 자산수선유지비	
관용차량 소모품 구입 등	210-10	3. 차량 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 계정과목 : 소모성물품비	
동호회지원, 연구모임지원 등	210-12	3.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 계정과목 : 모임지원비	
청소비, 관리비, 무인경비 구역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소방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료 등	210-09	3. 시설장비유지관리의 구역비 *계정과목 : 관리구역비	* 청소비, 관리비 등의 항목들은 일선 관서마다 배정된 예산이 다르지만 (210-09 OR 210-15) 재무결산 상 같은 계정과목으로 연결되므로 배정된 예 산에 따라 세부항목을 선택 예) 청소비가 210-09인 경우 - 세부항 목을 3. 시설장비유지관리의 구역 비 선택 예) 청소비가 210-15인 경우 - 세부항 목을 1. 정부업무를 외부위탁함에 따른 운영비용 선택
	210-15	1. 정부업무를 외부위탁함에 따른 운영비용 * 계정과목 : 관리구역비	
과운영비, 축의금, 조의금, 부의금 등	210-16	4.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 하여 조직단위(과)로 지 급하는 과운영비 등 * 계정과목 : 일반업무비	
취업·창업특강 강사로, 외부강사 강사로 등	210-16	5.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 을 위한 자체교육강사로 및 시험관리비 * 계정과목 : 내부교육비	

지출종류	세목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수선유지비, 유지보수비	210-09 420-02 420-03 420-04 420-05 430-01	2. 자산가치의 증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수선유지 등 관련 지출	1. 일반유형자산(건물)수선유지비 2. 일반유형자산(구축물)수선유지비 3.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4.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5.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는 재무결산 상 5가지로 나뉘어짐. 각각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1. 일반유형자산(건물)수선유지비 : 국유재산목록의 재산종류명이 건물인 경우
2. 일반유형자산(구축물)수선유지비 : 국유재산목록의 재산종류명이 공작물인 경우
3. 기타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 1과 2를 제외한 국유재산, 물품인 경우
4.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
5. 유산자산수선유지비 : 유산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

별첨 2 재무계정과목 해설

계정과목	설 명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 운용목적으로 소유하는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 등을 말한다.
단기투자증권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1년 이내 처분예정인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미수채권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회수일이 1년 이내 도래하는 채권을 말한다.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산한 대손과 관련된 총당금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정부내단기대여금과 정부외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된다. 정부내단기대여금은 정부내거래로서 정부내 타부처의회계/기금간의 유상금전대여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전대차관대여금 및 정부내단기예탁금으로 한다. 정부외단기대여금은 정부외외기관과의 거래로서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회수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전대차관대여금 및 단기용자금으로 한다.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정부 용자금의 원금과 정부 용자금 회수가능가액의 순현재가치의 차액 또는 대손추산액으로 회수일일이 1년 이상인 장기용자금으로 분류된 용자금의 유동성대체에 따른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의 유동성대체액을 말한다.
기타유동자산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동자산으로서 재고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및 지급보증금 등을 말한다.
장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만기 1년 이상의 예금 등을 말한다.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은 정부내장기대여금과 정부외장기대여금으로 분류된다. 정부내장기대여금은 정부내거래로서 정부내타부처의회계·기금 간의 유상금전대여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전대차관대여금 및 정부내장기예탁금으로 한다. 정부외장기대여금은 정부외외기관과의 거래로서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 재정상태표일 현재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전대차관대여금 및 장기용자금으로 한다.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국가회계실체가 실행한 대여금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금액으로 대여금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함
장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상 이거나 1년 이후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계정과목	설 명
기타투자자산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서 투자회원권, 파생상품자산 및 신탁사업수익권 등을 말한다.
토지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을 제외한 대지·임야·전답·잡종지등
건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을 제외한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건물부속설비 등
구축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을 제외한 교량, 궤도, 저수지, 갯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기계장치	① 이동성기계장치 : 기계장치 중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기계장치, 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기중기 등)와 기타의부속설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을 제외함 ② 고정성기계장치 : 구축물, 공작물 및 중요한 기계기구 중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고 분리되면 부동산의 개별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계장치와 기타의 부속설비로서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을 제외함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책상, 전화기 및 복사기 등 집기비품 및 자동차, 크레인,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차량운반구 ① 전기통신기기 : 전화기, 팩스 및 통신망단자 등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기기 ② 사무용기기 :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등 사무목적으로 보유중인 기기 ③ 사무용집기 : 책상, 의자 및 책장등 사무목적으로 보유중인 집기 ④ 운반건설기계및차량 : 차량운반구로서 승용차 등 차량과 크레인 등 건설에 사용되는 차량 ⑤ 선박및항공기 : 선박 및 항공기 등
기타일반유형자산	입목 및 그 외의 기타자산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은 제외함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 각각의 건설중인 자산으로 기말현재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자산을 의미한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프트웨어	① 내부개발소프트웨어 :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프로그램 등 ② 외부구입소프트웨어 :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
기타무형자산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국가의 행정 목적 등으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장기미수채권	정부 고유의 행정활동, 재화 및 용역제공활동 등의 거래에 의하여 장래에 일정한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회수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권을 말한다.

계정과목	설 명
장기미수채권 대손충당금	즉시 현금수취를 하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고 현금회수가 가능하여 발생하는 미수채권의 경우에는 항상 회수불능위험이 상존하는데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채권을 회수가 불가능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한다.
기타의기타 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중 장기미수채권 및 관련계정 이외의 각종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 국채, 공채)였으나 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부채에 대하여 유동성장기차입부채로 대체한다.
기타유동부채	유동부채 중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이외의 부채를 말한다.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로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부채를 말한다.
기타 장기차입부채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기가 1년 이상인 부채 중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전직원(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및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제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장기충당부채	기타장기충당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장기충당부채를 말한다.
장기미지급금	국가회계실체의 자산취득과 사회보험, 연금 및 보험 등의 비용부담 과정에서 발생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임.
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 차금	기미지급금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금액
재화및용역제공 수익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제품 등을 비롯한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대가, 일반적인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이자수익	외부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나 은행에 예치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및 국채·공채·지방채·회사채 등 장·단기 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평가이익	파생상품, 외화자산 및 기타자산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시 사용된다.

계정과목	설 명
자산처분이익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 금액을 말한다.
기타수익	교환수익 중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 보험, 보증수익을 비롯한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등의 수익 이외의 각종 수익을 말한다.
부담금수익	정부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공법상 금전급여의무를 의미한다.
제재금수익	정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재적인 성격으로 부담시키는 각종 부과금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 고용주실체 및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나 기여금을 의미한다.
기타비교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및 사회보험수익을 제외한 각종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채무면제이익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채무이행을 면제해 준 결과로 채무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기타자원조달및 이전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위에서 설명한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각종 자원조달 및 이전거래를 의미한다.
재화및용역제공 원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판매되거나 소모된 재고자산/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가를 의미한다.
인건비	공무원 등이 고용관계 또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상여, 퇴직급여 등의 일체의 금품 및 이익을 말한다.
복리후생비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경비 등을 말한다.
소모품비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용품 및 비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인쇄비	업무관련 인쇄물 등의 제작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광고선전비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를 위해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지급수수료	업무대행, 포장, 보관, 운송 등 일정 용역의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연구개발비	새로운 제품·용역·기술을 개발·창조하기 위하여 행해진 조사·연구 활동에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세금과공과	자동차세, 관세 등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와 협회비 등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및 공공요금 지출액을 말한다.
수도광열비	급수, 난방, 조명을 위해 지출되는 상하수도비, 연료비, 전기료 등을 말한다.
지급보험료	기관을 위해 가입된 각종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납입액을 말한다.

계정과목	설 명
피복비외급량비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되는 제복·제복 구입액 및 주·부식대를 말한다.
교육훈련비	공무원의 장·단기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지급임차료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 차량 등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을 말한다.
유류비	업무용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등을 가동하기 위한 유류 구입액을 말한다.
수선유지비	건물, 구축물, 기계, 비품 등의 수선 및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수선에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여비교통비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된 여비 및 교통비를 말한다.
업무추진비	외빈초청, 각종 회의 및 공식행사 개최 등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지출액을 말한다.
외주용역비	기관외부의 자가 행한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보전비	각종 보상비, 배상비, 재해복구지원비, 포상금 지출액을 말한다.
출연비	각종 공공기관, 국내 및 국외 민간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출액을 말한다.
보조비	각종 공공기관, 국내 및 국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출액을 말한다.
기타이전비용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액을 말한다.
감가상각비	유·무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상각비를 말한다.
대손상각비	업무관련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손실 가능성을 추정하여 자산에서 차감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비용	각종 국채와 공채, 차입금 및 금융리스 등 자본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을 말한다.
평가손실	파생상품 및 외화 등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자산감액손실	각종 투자증권,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등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손실로 인식하는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자산처분손실	각종 투자자산,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등 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이 미달하는 경우 손실로 인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기타비용	위 항목에서 열거되지 않은 비용으로 예를 들어 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유산자산취득비, 법인세비용, 전기오류수정손실, 잡손실 등이 있다.